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검역의 전문성·효율성 향상 및 검역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「검역법」이 일부 개정('20.3.4.공포, '21.3.5.시행)됨에 따라, 검역조사의 대상 및 생략기준, 검역조치 관련 관계기관 협조요청사항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검역조사의 대상 및 생략 기준 세부내용 마련(안 제1조의2 신설)

검역조사의 대상과 접촉함으로서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, 검역조사 전부생략과 일부생략의 기준 및 검역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 검역업무가 되도록 함

나. 검역조치 관련 관계기관 협조요청사항 규정(안 제1조의3 신설)

검역조치 시 관계기관 협조요청사항으로 세관정 및 구급차 사용 등을 신설하여 신속한 검역업무가 되도록 하고, 검역인력 지원 및 임시 격리시설 설치를 신설하여 검역감염병 유행 시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

다.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에 따라 권한의 위임조항 신설(안 제2조의4 신

설)

정부조직법 개정('20.8.11.공포, '20.9.12.시행)에 따른 질병관리청 조직 개편으로 질병대응센터장이 임시 격리시설 설치·운영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검역조치 및 격리 협조요청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검역조사의 대상 등) ① 「검역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 제1항제2호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다.

1. 범죄의 예방 및 피의자 체포를 위한 압수, 수색업무 등
2. 긴급구호활동

②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내용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”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법 제6조제3항제1호, 같은 항 제2호 중 출입국자 및 화물을 내리지 않는 운송수단, 같은 항 제3호,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검역조사를 전부 생략할 수 있다.
2. 법 제6조제3항제2호 중 화물을 내리지 않으나 출입국자를 내리는 운송수단,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제1호, 제3호, 제4호의 검역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여 줄 것을 신청하

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법 제6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.

제1조의3(관계기관 협조요청)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.

1. 해상 승선 검역을 위한 세관정의 사용
2. 검역감염병 환자,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(이하 “검역감염병 환자등”이라 한다) 또는 검역감염병 접촉자 등의 이송을 위한 구급차 및 그 외 운송수단의 사용
3. 검역감염병 유행 시 의료인 등 검역인력 지원
4.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임시 격리시설의 설치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검역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9조의4제1항”을 “법 제29조의4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의2제2항 중 “법 제29조의5제6호”를 “법 제29조의5제7호”로 “외교부장관”을 “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2조의4를 제2조의5로 하고,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4(권한의 위임)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15조제1항제4의2호 및 제7호에 따른 검사에 관한 검역조치
2.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임시 격리시설 설치·운영
3. 법 제29조제1항제3호 중 검사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같은 항 제4

호, 제6호, 제7호에 따른 검사 및 감염병 매개체 조사 등

4. 법 제34조제1호 중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진찰 또는 검사조치의 수수료 징수

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
2. 법 제15조제1항(제4의2호 및 제7호 제외한다)에 따른 검역조치
3.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
4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격리조치 관련 협조요청
5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역감염병 접촉자등에 대한 감시 또는 격리 요청
6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운송수단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
7.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발급
8.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비 응급처치 비상품 구비
9. 법 제29조제1항(제3호 중 검사에 관한 사항, 제4호, 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조치
10. 법 제34조(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진찰 또는 검사수수료 징수는 제외한다.)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

제2조의5(중전의 제2조의4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의5(중전의 제2조의4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질병관리청장”을 “질병

관리청장(법 제37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법 제5조의2에 따른 오염인근지역”을 “법 제5조에 따른 검역관리지역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의2 중 “법 제12조”를 “법 제12조부터 제12조의5까지”로 한다.

제2조의5(중전의 제2조의4)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.

별표 제2호가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가목,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,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나목, 사목 및 아목으로 하며, 같은 호 나목(개정 전 사목) 중 “법 제29조의3”을 “법 제12조의2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1조제2항제2의2호	200
별표 제2호아목(개정 전 자목) 중 “운송인”을 “운송수단의 장”으로 한다.		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<u>제1조의2(검역조사의 대상 등) ①</u> <u>「검역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제2호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다.</u> <u>1. 범죄의 예방 및 피의자 체포를 위한 압수, 수색업무 등</u> <u>2. 긴급구호활동</u> <u>②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내용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”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</u> <u>1. 법 제6조제3항제1호, 같은 항 제2호 중 출입국자 및 화물을 내리지 않는 운송수단, 같은 항 제3호,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검역조사를 전부 생략할 수 있다.</u> <u>2. 법 제6조제3항제2호 중 화물을 내리지 않으나 출입국자를 내리는 운송수단, 같은 항 제4</u>		

<신 설>

호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제1호, 제3호, 제4호의 검역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법 제6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.

제1조의3(관계기관 협조요청)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.

1. 해상 승선 검역을 위한 세관 정의 사용
2. 검역감염병 환자,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 (이하 “검역감염병 환자등”이라 한다) 또는 검역감염병 접촉자 등의 이송을 위한 구급차 및 그 외 운송수단의 사용
3. 검역감염병 유행 시 의료인 등 검역인력 지원
4.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임시

제2조(승객예약자료의 관리) ①
질병관리청장은 「검역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승객예약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② ③ (생략)

제2조의2(관계 기관의 협조) ①
(생략)

② 법 제29조의5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”이란 외교부장관을 말한다.

<신설>

격리시설의 설치

제2조(승객예약자료의 관리) ① -
----- 법 제29조의4제1항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③ (현행과 같음)

제2조의2(관계 기관의 협조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29조의5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”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.

제2조의4(권한의 위임)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15조제1항제4의2호 및 제7호에 따른 검사에 관한 검역조치

2.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임시격리시설 설치·운영

3. 법 제29조제1항제3호 중 검사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같

은 항 제4호, 제6호, 제7호에
따른 검사 및 감염병 매개체
조사 등

4. 법 제34조제1호 중 법 제15조
제1항제7호에 따른 진찰 또는
검사조치의 수수료 징수

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에
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
소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
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

2. 법 제15조제1항(제4의2호 및
제7호 제외한다.)에 따른 검역
조치

3.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역
감염병 환자등의 격리

4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격리
조치 관련 협조요청

5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역
감염병 접촉자등에 대한 감시
또는 격리 요청

6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
운송수단등의 이동금지 등의
조치

7.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
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발

제2조의4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질병관리청장 및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5조의2에 따른 오염인 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

급

8.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비 응급 처치 비상품 구비

9. 법 제29조제1항(제3호 중 검사에 관한 사항, 제4호, 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.)에 따른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조치

10. 법 제34조(법 제15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진찰 또는 검사 수수료 징수는 제외한다.)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

제2조의5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질병관리청장(법 제37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

1. 법 제5조에 따른 검역관리지역-----

사람의 검역조치에 관한 사무 1의2. <u>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치에 관한 사무</u> 2. ~ 4. (생략) 5. <u>법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에 관한 사무</u> 6. · 7. (생략) 8. <u>법 제29조의3에 따른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의 신고에 관한 사무</u> 9. · 10. (생략)	----- 1의2. <u>법 제12조부터 제12조의5까지</u>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 <삭제> 5. · 6. (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) <삭제> 7. · 8. (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	
연 락 처	(043) 719 - 9204